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5일, 이성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3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4.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권의원)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복지, 교육, 환경 등 여러 공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부처나 기관별로 유사하고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협력이나 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생태계를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법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 참여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이주민들도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센터의 운영 자생력을 강화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의 장벽을 낮추어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